<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902/dh20190207093707137820.htm>

2019년 자료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10%를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기금은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며, 아파트 시설정비, 복지회관건설 등으로 지원된다.

인천연구원의 시정이슈제안 제80호에 발표된 ‘수도권매립지 관련 주요 현안 점검’에 따르면 SL공사의 주민지원기금은 2016년 기준으로 매립지 인근 주민 1인당 43만8055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의 주민지원기금 지원범위는 매립지 반경 2km 내 간접영향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간접영향권에 포함된 구역 인구는 2016년 기준 3만9000여 명으로, 50만이 넘는 인천 서구 인구의 8%에도 못 미친다. 특히 인구 밀집지역인 인천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서구 신도시들은 대부분 빠져있다. 이 신도시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협의기관의 협의의견에서 악취민원의 증가가 우려되고 적극적인 저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곳이거나 악취우려 지역과 인접해 있는 곳이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심해지자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50%인 가산금과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추가로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계양구, 서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일원 중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원범위를 확대 규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테이블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